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138호

2019년도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(R&D) 지원계획 공고

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「2019년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사업(R&D)」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우수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9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□ **(사업목적)**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**(사업내용)**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"지역우수기업*" 중 성장성이 우수하고,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

*** 최근 3년 매출액(50~400억원 내외)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**

< 2019년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(R&D) 개요 >

구 분	세부내용	구 분	세부내용
프로그램	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(R&D)	추진체계	지역우수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지원규모	318억원(국비 291, 지방비 27)	협약방식	연차별 협약
지원기간	1년(12개월)	기 술 료	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
지원한도	3억원 내외	신청접수	'19.3~4월
출연비중	사업비의 70% 이내	평가선정	'19.5월

*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, 개발기간·출연금 비중은 '최대'를 의미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신규과제 선정계획 : 318억원 (국비 291억원, 지방비 27억원)

□ 지원내용

○ **(사업내용)** 지역별로 특성화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우수기업의 기업성장전략상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제안형 (자유공모) R&D과제 지원

<고용의무조건>

ㅇ 연평균 국비(지방비) 2억원당 1명 신규(청년) 채용계획 제출 의무(채용 후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
- 본 사업에서 정하는 **'청년'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**이며,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
- 신규인력은 반드시 **해당 사업에 참여**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
- 자세한 사항은 **'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'** 참조

○ **(추진체계)** 지역우수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
- 주관기관 : 지역우수기업으로서 신제품 상용화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
- 참여기관 :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

○ **(공모방식)** 자유공모

○ **(지원규모 및 기간)** 연 3억원 내외, 1년(12개월)

- 지원기간 : '19.06.01.~'20.05.31.(12개월)

□ 신청자격

○ **(주관기관)** 지자체 주도로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우수기업

*** '지역우수기업'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**

○ **(참여기관)**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*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* 중소, 중견기업에 한하며, 대기업은 참여 불가

* '기술전문기업(ESP, Engineering Service Provider)'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(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)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항목(배점)	평가지표(안)
필요성	○지원 필요성	○제안한 기술개발과제가 **기업성장전략상 필요한 과제인가?** ○동 사업지원을 통해 **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?**
기술성	○개발 개요	○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? ○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, 질적으로 우수한가? ○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?
	○목표 및 내용	○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? ○제시한 과제목표는 **세계최고 수준대비 동등 또는 우수한가** ? ○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? ○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,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?
사업성	○사업화 계획	○사업화 및 **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이 우수**하고, 향후 시장을 분석·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? ○개발결과의 사업화·글로벌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인가?
	○매출효과	○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? ○**수출목표 설정이 타당**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
지역 발전효과	○고용영향평가	○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
		○성과공유 및 근로환경
	○산업생태계 중요도	**○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, 하청·납품업체들과의 동반성장효과가 기대되는가 ?** **○향후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가 ?** *** "거래관계 핵심기업" :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·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(또는 완제품 대기업) 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**
경영 능력	○추진체계 및 연구자원	○참여기관 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? ○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 ○참여연구원이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? ○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? ○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,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? ○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
	○사업비 편성	○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?

※ 고용영향평가의 경우, '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'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·지역별 지원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지역	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(R&D)		
	국비	지방비	합계
부산	2,185	-	2,185
대구	2,185	300	2,485
대전	2,185	-	2,185
광주	2,185	-	2,185
울산	2,185	-	2,185
강원	2,185	-	2,185
충북	2,185	-	2,185
충남	2,185	-	2,185
전북	2,185	936	3,121
전남	2,185	500	2,685
경북	2,185	800	2,985
경남	2,185	-	2,185
제주	2,185	-	2,185
세종	732	168	900
합계	29,137	2,704	31,841

4. 사업비 부담비율

□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

구분	국비 또는 지방비	민간부담금	민간부담금 중 현금
중소기업 (주관 또는 참여)	해당기업 사업비의 70% 이하	해당기업 사업비의 30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% 이상
중견기업 (참여)	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하	해당기업 사업비의 50% 이상	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
기타	해당기관 사업비의 100% 이하	해당기관 사업비의 0% 이상	필요 시 부담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
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

※ '기술전문기업(ESP, Engineering Service Provider)'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,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

5. 기술료 징수

□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**“혁신성과”, “보통”, “성실수행”**인 과제의 영리기관(주관·참여)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

□ 기술료 징수방식 : 과제종료 후 **“경상기술료”** 의무 적용

□ 기술료 납부방법

○ **(경상기술료)**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

* **(전담기관)**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**(관리기관)** 지역사업평가단

실시기업 유형	착수기본료	정률기술료	최대 징수한도
중소·중견기업	출연금의 1%	매출액 기준 산정 (아래 산식 참조)	출연금의 20%

- **(착수기본료)**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

- **(정률기술료)**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

○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“세무조정계산서”와 “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” 및 “경상기술료율(5%)” 등에 따라 산정

정률기술료 징수금액 =	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	(제출서류)
	×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	(기업약정)
	×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	(규정내용)
	× ④ 경상기술료율(5%)	(규정내용)

* 산식 및 세부내용은 **‘기술료 관리규정’** 및 **‘경상기술료 매뉴얼’** 참조

6. 유의사항

□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*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.

* (RCMS)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www.rcms.go.kr)

□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.

○ 수행기관이 3,00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

□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.

□ 반드시 **총괄책임자는 30%** 이상, **참여연구원은 10%**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.

□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"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"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.

□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, 다음 경우*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

*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(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(서식 제2호)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)
*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
*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(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)
*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정부출연금의 50%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
*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

□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,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**"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"**의 경우,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(연구수당, 학생인건비 제외)는 현금 계상 불가

□ 간접비 내에서 「**기술자료 임치제도***」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

*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(기술자료)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
* 해당 제도 활용 시,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
* 별도의 **'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'** 참고

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 제31조(사업비 계상)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,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.

□ 중소기업 '고용영향평가' 평가지표 적용(30% 반영)

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 <별표 4-1> 우대기준 및 <별표 4-2> 감점기준에 따라 가·감점*을 적용함.

* 단, 요령에 의거하여 **가점은 최대 5점**을 넘을 수 없고, **'일자리평가'**의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
*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**'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'** 참조

☞ 정부의 '일자리 안정자금'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, 가점 5점
☞ TIPS, VC,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, 가점 5점 (단, 증빙자료 제출 시)
☞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(첫걸음기업)의 경우, 가점 5점
☞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·감점 등(예시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'혁신성과'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, 가점 2점
- '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'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, 가점 2점
- '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'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, 감점 1점
-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,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% 이상일 경우, 가점 1점(단,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)
-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'상생협력우수기업', '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', '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' 및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, 가점 1점 등

□ **'청년고용 의무조건'**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최종평가에서 "보통"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.

□ 사업계획서 접수시, 전담PM을 통해 수립된 **'기업성장전략'** 자료 제출

7. 지원 제외 대상

□ 신청과제가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유사·중복성이 확인될 경우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
*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,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, 참여연구원의 경우, 해당자 변경 필요

□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

*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,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

□ 주관·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·환수금·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□ 「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」<별표 3>의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.

□ 지역산업육성사업(R&D)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.

수행중 과제수	신규 신청가능 여부	신규 수행가능 과제수
3개	불가	불가
2개	가능	1개
1개	가능	2개
0개	가능	3개

*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&D사업을 기준으로 함.
*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.
* 단,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, 중소기업R&D역량제고,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, 첫걸음협력R&D, 제품서비스R&D, 기술전문기업협력R&D, 공정·품질R&D, 구매조건부신제품R&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.
*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**'사업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'** 참조

8. 절차 및 일정

공 고	⇨	사업계획서 접수	⇨	현장실태 조사	⇨	평가위원회 개최	⇨	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	⇨	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'19.3.19.		~'19.4.19.		~'19.5월중		~'19.5월말		~'19.6월초		~'19.6월말

*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9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온라인 접수기간 : 2019.4.08.(월) 09:00 ~ 2019.4.18(목) 18:00까지

○ 신청서류 제출기간 : 2019.4.09.(화) 09:00 ~ 2019.4.19(금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○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방문 제출)

○ 온라인 접수처 : http://www.k-pass.kr

*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[접수처 홈페이지] 참조
* **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(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)**
* 온라인 접수기간(마감일 18:00)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
*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

○ 온라인 접수 문의처 : 02-6009-4374, 4376, 4390

○ 신청서(양식) 제공 :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홈페이지, 온라인 접수처*에서 다운로드 가능

* **(홈페이지)** http://www.kiat.or.kr, **(온라인 접수처)** http://www.k-pass.kr

○ 신청서류 제출처 : 지역별 관리기관(지역사업평가단)에 방문 제출

* 우편,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, **직접 방문 제출**만 가능
*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

10. 관련 법령

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

□ 지원근거

법령	관련 조항
국가균형발전특별법	▸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산업기술혁신촉진법	▸ 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

□ 관련규정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)

구분	관련 규정
고시	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지침	▸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
부속 요령	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
	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	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기타	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

11. 접수 및 문의처

□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

구분	소속	문의전화
주관부처	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	042-481-1679
전담기관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	02-6009-3729

* '지역산업육성사업' 공식 블로그(http://blog.naver.com/regional_industry)

□ 지역별 관리기관

기관명	주소지	문의전화
(재)부산지역사업평가단	**부산** 사상구 엄궁로 70-16,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	051-315-9247
(재)대구지역사업평가단	**대구** 북구 경대로17길 47,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	053-818-9591
(재)대전지역사업평가단	**대전** 유성구 문지로 193,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	042-864-4275
(재)광주지역사업평가단	**광주** 북구 추암로 249,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	062-604-9123, 9124
(재)울산지역사업평가단	**울산** 중구 종가로 362-11,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	052-248-5764
(재)강원지역사업평가단	**강원** 춘천시 강원대학길 1,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	033-258-2653, 2681
(재)충북지역사업평가단	**충북**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-41,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	043-278-2711, 2713, 2718
(재)충남지역사업평가단	**충남**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,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28호	041-415-2164
(재)전북지역사업평가단	**전북**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,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	063-278-9737
(재)전남지역사업평가단	**전남**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-7, 레이저시스템 산업지원센터 2층	061-399-7522
(재)경북지역사업평가단	**경북** 경산시 삼풍로 27,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	053-818-9504
(재)경남지역사업평가단	**경남**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, 본부동 207호	055-259-3405
(재)제주지역사업평가단	**제주** 제주시 첨단로 213-3, 스마트빌딩 420호	064-759-7425

*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·관리는 (재)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

*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별도의 **'지역별 지원계획'** 참조